

구 분	위 치	관 할 구 역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	노원,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강북, 광진 전역
가양하수처리사업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91	영등포, 관악, 동작, 구로, 양천, 강서, 금천전역, 강남, 서초, 광역시 일부
난지하수처리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	마포, 용산, 은평, 서대문전역, 종로, 중구, 성동 일부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위와 그에 대한 각종 신고 기타 행위는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탄천하수처리시설장의 행정처분 등과 그에 대한 신고 등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지하생활공간공기질기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기질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지하생활공간을 조성하도록 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지하생활공간"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지하시설로서 법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를 말한다.
- "지하공기질기준"이라 함은 지하생활공간의 쾌적한 공기질의 유지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지하공기질기준) 지하생활공간이 유지하여야 하는 지하공기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①이 조례 제3조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존속기한이 개정되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3조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별 표]

지하공기질기준(제3조 관련)

항 목	적용기간 및 기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002년 1월 1일 이후
아황산가스( SO <sub>2</sub> )	1시간 평균치 0.12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	1시간 평균치 10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0ppm 이하
이산화질소( NO <sub>2</sub> )	1시간 평균치 0.14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4ppm 이하
미세먼지( PM-10 )	24시간 평균치 200 $\mu\text{g}/\text{m}^3$ 이하	24시간 평균치 140 $\mu\text{g}/\text{m}^3$ 이하
이산화탄소( CO <sub>2</sub> )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HCHO)	24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납(Pb)	24시간 평균치 1 $\mu\text{g}/\text{m}^3$ 이하	24시간 평균치 1 $\mu\text{g}/\text{m}^3$ 이하